

검단호수공원역 파라곤(AA36BL) 입주자모집공고



※ 본 입주자 모집공고문은 축약본으로 입주자 및 청약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및 스마트폰 앱 또는 '검단호수공원역 파라곤' 홈페이지(http://검단호수공원역파라곤.com)의 입주자 모집공고 전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내용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661-5691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인천광역시 거주자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거주자	비규제지역	
제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무기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10년	3년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	없음	적용	공공택지, 대규모택지

■ 주요일정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6.03.27(금)	26.04.06(월)	26.04.07(화)	26.04.08(수)	26.04.14(화)	26.04.17(금)~ 26.04.24(금) [8일간]	26.04.27(월)~ 26.05.01(금) [5일간]

1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 주택과 - 5048호(2026.03.26)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신도시 AA36BL(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589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6~24층 7개동 총 569세대
 [특별공급 365세대(기관추천 56세대, 다자녀가구 56세대, 신혼부부 130세대, 노부모부양 16세대, 생애최초 107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8년 7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약식 표기 (타입)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 면적(이하 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2026 000065	01	084.7722A	84A	84.7722	26.1924	110.9646	59.7877	170.7523	54.2458	297	29	29	68	8	56	190	107	14
	02	084.7572B	84B	84.7572	26.1894	110.9466	59.7771	170.7237	54.2362	272	27	27	62	8	51	175	97	14
				합계						569	56	56	130	16	107	365	204	28

■ 공급금액 표 (단위 : 세대, 원)

약식 표기	공급 세대 수	동, 라인	층 구분	해당 세대 수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대지비	건축비	계	1차 (5%) 계약시	2차 (5%) 계약후 30일 이내	2026-09-25	2026-12-25	2027-05-25	2027-09-25	2027-12-25	2028-03-25		입주 지정일
84A	297	5901, 5902, 5903, 5904, 5905, 5906, 5907동 2,3호	1F	7	248,191,611	348,808,389	597,000,000	29,850,000	29,850,000	59,700,000	59,700,000	59,700,000	59,700,000	59,700,000	59,700,000	59,700,000	179,100,000
			2F	14	248,191,611	360,808,389	609,000,000	30,450,000	30,45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182,700,000
			3F	14	248,191,611	373,808,389	622,000,000	31,100,000	31,100,000	62,200,000	62,200,000	62,200,000	62,200,000	62,200,000	62,200,000	62,200,000	186,600,000
			4F	14	248,191,611	386,808,389	635,000,000	31,750,000	31,750,000	63,500,000	63,500,000	63,500,000	63,500,000	63,500,000	63,500,000	63,500,000	190,500,000
			5층 이상	248	248,191,611	396,808,389	645,000,000	32,250,000	32,250,000	64,500,000	64,500,000	64,500,000	64,500,000	64,500,000	64,500,000	64,500,000	193,500,000
84B	272	5901, 5902, 5903, 5904, 5905, 5906, 5907동 1,4호	1F	7	248,147,688	346,852,312	595,000,000	29,750,000	29,750,000	59,500,000	59,500,000	59,500,000	59,500,000	59,500,000	59,500,000	178,500,000	
			2F	11	248,147,688	358,852,312	607,000,000	30,350,000	30,350,000	60,700,000	60,700,000	60,700,000	60,700,000	60,700,000	60,700,000	182,100,000	
			3F	14	248,147,688	372,852,312	621,000,000	31,050,000	31,050,000	62,100,000	62,100,000	62,100,000	62,100,000	62,100,000	62,100,000	186,300,000	
			4F	14	248,147,688	385,852,312	634,000,000	31,700,000	31,700,000	63,400,000	63,400,000	63,400,000	63,400,000	63,400,000	63,400,000	190,200,000	
			5층 이상	226	248,147,688	395,852,312	644,000,000	32,200,000	32,200,000	64,400,000	64,400,000	64,400,000	64,400,000	64,400,000	64,400,000	193,200,000	

-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상한제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사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주택 공급 신청 시 [주택형] 또는 [형]은 입주자모집공고 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중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분양대금 납부계획 및 납부방법

계약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계약금 납부계획	수협은행	1010-2749-9416	주택도시보증공사서부피에프금융지사

- 상기 계좌 및 세대별 공급계약서상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납부도 정당한 분양대금의 납부로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최초 공급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현장수납이 불가하며, 계약 체결 시 무통장입금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납부일로부터 환불 시까지에 대한 별도 이자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금 이후 중도금부터 잔금까지의 분양대금에 대해 사업주체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계약서에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해당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꼭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1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호길동'으로 기재)

2 발코니확장 및 시스템에어컨

(1)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약식표기)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금 (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84A	6,800,000	680,000	6,120,000	
84B	6,900,000	690,000	6,210,000	

(2)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약식표기)	선택안	설치개소	설치위치	공급금액	비고
84A	1안	3	거실 + 주방 + 침실1	6,600,000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10,400,000	
84B	1안	3	거실 + 주방 + 침실1	6,600,000	
			거실 + 주방 + 침실1 + 침실2 + 침실3	10,400,000	

(3) 발코니확장 공사비 및 추가선택품목 납부계획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확장공사비 및 추가선택품목 납부계획	수협은행	1010-2749-9435	주택도시보증공사서부피에프금융지사

3 특별공급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구분(약식표기)	84A	84B	합계
	국가유공자	3	2
장기복무 제대군인	2	2	4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2	2	4
중소기업 근로자	6	5	11
북한이탈주민	2	2	4
우수선수	2	2	4
철거주택 (제36조제1호, 통장미사용)	2	2	4
장애인	인천광역시	4	4
	서울특별시	3	3
	경기도	3	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해당사·도(인천광역시) 거주자(50%)	15	29
	기타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50%)	14	27
신혼부부 특별공급	68	62	130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8	8	16
생애최초 특별공급	56	51	107
합계	190	175	365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구분	내용								
공급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처리방법</th> </tr> </thead> <tbody> <tr> <td>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 <td>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 </tr> <tr> <td>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td> <td>부부 중복당첨된 경우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td> </tr> <tr> <td></td> <td>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형(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모두 부적격 처리</td> </tr> </tbody> </table>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 중복당첨된 경우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형(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모두 부적격 처리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 중복당첨된 경우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형(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모두 부적격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인 주민등록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동 유사사항" p2 참조)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4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인천광역시) 50%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50%
 ▶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도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5 기타사항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통신감리
회사 명	주식회사 하우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주)영화기스톤건축사사무소	(주)한성기술단
감리금액	1,823,193,900	542,399,000	821,889,590	124,740,000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검단호수공원역 파라곤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1282026-101-0002400호	254,955,400,000원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

□ 사업주체 및 시공사

구분	상호	주소	법인등록번호
사업주체	(주)동양건설산업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139번길 11(권선동)	110111-0004038
시공사			

□ 홈페이지 주소 : http://검단호수공원역파라곤.com

□ 견본주택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1006-3

※ 견본주택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방문 시 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문의 : ☎ 1661-5691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어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착오가 있을 수 있으나,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에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병령이 우선함 /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